

제4강

# 정보주체의 권리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 6. 2.

# GDPR 제3장의 구성

# GDPR 제3장 정보주체의 권리

GDPR 2015. 12. 15. 합의안 → 2016. 4. 6. 최종안 → 2016. 4. 14. 유럽의회 통과  
→ 2016. 5. 4. Official Journal 공표 → 2016. 5. 24. 효력 → 2018. 5. 25. 시행

## 제1절 투명성과 양식 (TRANSPARENCY AND MODALITIES)

- 제12조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투명한 정보와 소통 및 양식
- 제13조-> (삭제) 정보수취인에 관한 권리 (->제19조: 정정 등 통지의무)

## 제2절 고지와 정보에 대한 접근 (INFORMATION AND ACCESS TO DATA)

- 제14조-> 제13조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제공되어야 할 정보
- 제14조a-> 제14조 정보주체로부터 취득 않을 때 제공되어야 할 정보
- 제15조 정보주체의 액세스권 (Right of access by the data subject)

## 제3절 정정과 삭제 (RECTIFICATION AND ERASURE)

- 제16조 정정권 (Right to rectification)
- 제17조 삭제권 ("잊혀질 권리") Right to erasure("right to be forgotten")
- 제17조a-> 제18조 처리제한권 (Right to restriction of processing)
- 제17조b-> 제19조 정정·삭제·처리제한에 대한 통지의무
- 제18조-> 제20조 정보이동권 (Right to data portability)

## 제4절 거부권과 자동화된 개인적 의사결정

- 제19조-> 제21조 반대할 권리(Right to objection)
- 제20조-> 제22조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인적 의사결정

## 제5절 제한 (RESTRICTIONS)

- 제21조-> 제23조 제한(Restrictions)

# 정보주체 권리의 적용배제

## ❖ GDPR 제85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권 v. 표현 및 정보의 자유 간의 조화 위해 필요한 경우,
- 언론의 목적, 학문적·예술적·문학적 표현의 목적 위한 처리에 대해,
- 제3장(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의 예외 or 적용배제를,
- 회원국에서 규정하여야 함

# 정보주체 권리의 제한

## ❖ GDPR 제23조

- 유럽연합 또는 controller or processor 소속 회원국의 법률은,
- 그 제한이 **기본권과 자유의 본질**을 존중하면서 **민주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일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범죄의 예방과 수사 및 공소제기, 국가의 재정, 조세, 공중보건, 사법부 독립과 사법절차, 정보주체 보호 or 타인의 권리 보호 등
- 입법조치의 방식으로, 제12조~제22조(정보주체의 권리), 제34조(개인정보침해의 통지) 등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범위** 제한 가능

👉 **Recital (73)** : 그 제한은 EU기본권헌장 및 유럽인권협약에서 정한 요건 충족해야 함

# 1. 접근의 권리

## ➤ Directive 제12조 Right of access

- 회원국에 다음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액세스권 규정할 의무 부과
  - ✓ 정보주체와 관련한 정보의 처리 여부, 처리의 목적, 해당 정보의 종류 및 정보의 공개를 받을 수 취인 또는 수취인의 범주
  - ✓ 처리 중인 데이터와 그 출처에 관한 유용한 정보
  - ✓ 자동처리 결정 시, 정보주체와 관련한 정보의 자동처리에 포함된 로직(logic)에 관한 정보

## ➤ GDPR 제15조 Right of access by the data subject

-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confirmation) 받을 수 있는 권리 (제1항 전단)
- 처리되고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및 **다음의 정보**에 접근(access)할 권리(제1항 후단)
  - ✓ 처리의 목적,
  - ✓ 해당 개인정보의 종류,
  - ✓ 개인정보 공개 시 그 수취인 또는 수취인의 범주, 특히 제3국 또는 국제기구 소속의 수취인,
  - ✓ 개인정보 저장 예상 기간, 또는 예상 불가 시 그 기간 결정에 이용되는 기준,
  -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처리제한을 요구할 권리 또는 그 처리에 반대할 권리의 존재,
  - ✓ 감독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 ✓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경우, 그 출처에 관한 이용 가능한 정보,
  - ✓ § 22(1)·(4)의 profiling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존재, 관련 logic의 주요 정보, 정보주체를 위한 그 정보처리의 필요성과 예상 결과

## ➤ GDPR 제15조 Right of access by the data subject

- 개인정보가 제3국 or 국제기구에 이전될 경우, 그 이전에 관련된 적절한 보호조치에 대해 통지 받을 권리(제2항)
- 처리 중인 개인정보의 **복사본 확보**(obtain)할 수 있는 권리 (제3항)
  - 정보관리자는 처리 중인 개인정보의 복사본 제공할 의무 부담
  - 정보주체의 복사본 추가적 요구 시, 행정적 비용에 따른 합리적 수수료 징수 가능
  - 전자적 형태의 수단에 의한 요청 시, 정보주체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전자적 형태로 제공 필요
- 상기 복사본 취득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부정적 영향 불허(제4항).

cf. *Rijkeboer* 사건 : 접근 가능 기간을 과거 1년간으로 한정 가능?

##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열람청구권

-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사유 : 법률상 금지, 생명·신체·재산 등 이익, 공공기관 업무 등 3가지 (제35조 제4항)
- 열람청구의 불허 : 공공기관의 통계,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전과 안녕, 취재·보도, 선교, 선거 목적의 개인정보는 적용배제(제58조 제1항) - 전면 배제는 문제?

## ➤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열람청구권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열람청구 하는 경우 우선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 보충 적용 가능성은?

## 2. 정정의 권리

## ➤ Directive 제12조 Right of access

- 정보가 불완전·부정확한 경우에 **정정 받을 권리** (제2항)

## ➤ GDPR 제16조 Right to rectification

- 지체 없이 부정확한 개인정보의 정정을 받을 권리
- 보완적 진술 추가 등에 의해 불완전 개인정보를 **완전하게** 할 권리
- 정정사실의 통지 및 정보수취인 정보의 제공 의무(제19조)

##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정정청구권

- 열람 후의 청구 - 열람 이외의 사유로 부정확성 안 경우는?
- 정정청구의 불허 : 적용배제(제58조 제1항) - 전면 배제는 문제?

## ➤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정정청구권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정청구 하는 경우 우선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충 적용 가능성은?  
ex.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에 열거된 개인정보의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정청구권 배제 ?

# 3. 삭제의 권리

## ➤ Directive 제12조 Right of access

- 불완전·부정확 정보의 **삭제할 권리** (제2항)

## ❖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논의

- 개념
  - 개인이 포털 등 온라인 사업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온라인 네트워크상의 권리)
- 2010년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 : EU 집행위원회(Commission)의 부위원장
  - "정보를 수집할 당시의 목적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을 경우 당해 정보의 완전한 삭제를 청구할 개인의 권리"를 의미하는 '잊힐 권리'를 공식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
- 2012년 1월 25일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안)
  - 'Right to be forgotten'라는 제목 하에 정보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

## ➤ GDPR 제17조 Right to erasure("right to be forgotten")

cf. 2012. 11. 초안 :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

- 지체 없이 개인정보의 **삭제를 받을 권리**(제1항 전단)
- 일정한 사유 있는 때 정보관리자의 지체 없이 개인정보 삭제할 의무(제1항 후단)
- 링크·복사본·복제본의 **삭제 요구 사실의 통보** 위한 **합리적 조치** 의무(제2항)
  - 정보 공개하고 삭제의무 지는 자 → 제3의 정보관리자
  - 이용 가능한 기술력과 이행 비용의 고려 가능
  - 기술적 조치 등 합리적 조치 취해야

cf. 초안 : "자신의 책임 범위 내의 데이터에 대하여"

- **삭제사실의 통지 및 정보수취인 정보의 제공** 의무(제19조)

# 삭제의무의 인정 사유 (§17①)

- ✓ 수집 또는 처리 목적에 비추어 필요성 소멸 시
- ✓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및 정보처리의 근거 소멸 시
- ✓ 공적인 목적 or 타인의 정당한 이익 위한 처리 반대 및 처리 불가피한 사유 부재 시,  
✓ - or 마케팅 목적의 처리 반대 시
- ✓ 개인정보의 불법적 처리 시
- ✓ 자국 법률상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삭제 요구 시
- ✓ 아동에 대한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 직접 제공 관련 수집 시

## 적용 배제 사유 (§17③)

-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관련 권리 행사를 위한 때
- 자국 법률상 법적 의무의 준수 or 공익적 목적이나 공적 임무의 수행 위한 때
- 공중보건 영역 관련된 공익적 이유를 위한 때
- 공익 목적 아카이빙(archiving), 과학적·역사적 연구, 통계 위한 경우로서, 삭제 불가능 우려 또는 목적 달성 현저히 곤란 시
- 소송에서의 입증·공격·방어를 위한 경우

cf. **Gonzalez 사건** (2014. 5. 13. CJEU)

: **C-131/12, Google Spain SL v. AEPD & Mario Costeja Gonzalez, 13. 5. 2014.**

# 관련 판례 (Gonzalez 사건)

## ▶ 사건의 경과

- 스페인 변호사 Mario Costeja Gonzalez는 2010년 Google에서 자기 이름을 검색하다가, 과거 연금을 제때 내지 못해 자기 집이 경매에 붙여진 내용이 담긴 'La Vanguardia'라는 신문의 1998년 기사를 접하게 됨.
- 그는 그 신문 기사 내용이 부적절한 정보라고 주장하면서, 2010. 3. 5. 스페인 정보보호위원회(AEPD)에, 위 신문사와 구글 측(Google Spain 및 Google Inc.)을 상대로, 해당 기사의 삭제 및 검색결과의 노출 금지를 신청함.
- 위 신문사와 Google 측은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이유로 들어 Gonzalez의 신청을 거부함.
- AEPD는 2010. 7. 30. 위 신문사에 대해서는 노동사회부의 명령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Google 측에 대해서는 Google 검색 결과 화면에서 관련 링크를 없애라고 결정을 내림.
- 이에 Google 측이 스페인 고등법원에 AEPD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유럽사법재판소(ECJ)로 넘어오게 됨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14. 5. 13.** EU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비추어 구글 검색 결과에 링크된 해당 웹페이지의 정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며, Google 측의 청구를 기각함.

# 관련 판례 (Gonzalez 사건)

## ▶ 판결 주요 내용

### ◆ EU 개인정보보호지침상 콘텐츠 제공자 내지 검색엔진 운영자의 의무

- EU Directive 제12조 (b)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삭제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검색엔진의 운영자는 인명을 기초로 한 검색결과로부터 제3자에 의하여 공개되고 그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로의 링크를 제거할 의무를 가짐.
- 그 이름이나 정보가 원래의 웹페이지로부터 미리 또는 동시에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원래의 웹페이지 상 공개 그 자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동일함.

### ◆ ‘잊힐 권리’의 보유 여부

- EU Directive 제12조 (b)에 비추어 개인정보의 불완전 또는 부정확한 경우, or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부적당하거나 관련성이 없거나 초과적인 경우, or 최신의 정보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 or 역사적, 통계적, 과학적 목적으로 그 보유가 요구되지 않는데도 필요 이상 오래 보유하고 있는 경우, or 처음에는 정확한 정보의 적법한 처리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동 지침과 양립될 수 없다고 함.

# 관련 판례 (Gonzalez 사건)

## ▶ 판결 내용

- 본 사안에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의 민감성과 최초 공표가 16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는 그러한 목록에 의해 자신의 이름에 더 이상 링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함.
- EU 기본권헌장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권적 측면에서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에 포함되어 더 이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그러한 권리는 검색엔진 운영자의 경제적 이익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우월하며, 정보주체의 이름에 관한 검색에 나타나는 정보에 접근할 일반 공중의 이익보다 앞선다고 함.
- 다만, 정보주체가 공인으로 활동하는 경우와 같이 검색 결과에 포함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접근하는 대중의 우월한 이익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됨.

☞ '잊힐 권리' 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나,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해석상 그러한 권리가 도출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이 판결에서 인정된 잊힐 권리의 범위는 게시물의 직접적인 삭제가 아니라, 검색 결과에서 노출되지 않을 조치에 한정됨.

##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삭제청구권

- 열람 후의 삭제 - 열람 이외의 사유로 필요성 안 경우는?
- 삭제청구의 사유 : 정확성 오류 있는 경우에만?
- 삭제청구의 불허 : 법령상 수집 대상 명시, 열람 제한 또는 거부 사유 존재, 제58조 적용배제 경우 등
- 적용의 범위 : 학문·예술·출판·종교의 자유 or 영업의 자유 관련 활동은?
- 차단 조치에 의한 대체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제37조)에 준하여 삭제의 거부를 인정하고 그 대신 차단 조치를 통해 삭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

cf. 잊힐 권리 : 개인정보보호법의 삭제청구권은 열람이 선행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

##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삭제요청권

### ■ 피해자의 삭제 요청(제44조의2)

-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를 대상으로 함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한함
-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 가능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지체 없이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함

cf. 잊힐 권리는 타인의 권리 침해와 침해사실의 소명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파기(제29조 및 제30조 제3항)

- 수집·이용 목적 달성, 보유·이용 기간 만료, 사업의 폐업, 장기 미이용, 동의 철회 등의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 부과

cf. 잊힐 권리는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규정된 것이나, 삭제의무를 수반함.

개인정보의 파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파기 요구도 가능할 것

### ■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충 적용 가능성

- 권리 침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삭제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 4. 처리제한의 권리

## ➤ GDPR 제18조 Right to restriction of processing

### 1. 정보관리자로부터 **처리의 제한을 받을 권리**

- ✓ 정정 가능한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정보의 **정확성에 이의** 제기하는 경우,
- ✓ **처리가 위법**하고, 정보주체가 삭제 대신에 **이용의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 ✓ 처리 목적상 **필요성 소멸**하였으나, 정보주체가 **소송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 ✓ 정정할 때까지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에 반대**하고, **처리의 정당화 사유**가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월**한 경우

### 2. **처리제한 중**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or 소송수행 or 타인의 권리 보호 or EU 와 회원국의 중요한 공익적 이유를 위해서만 처리 가능 / **보존**의 경우 제외

### 3. 처리제한권리자에 대한 **처리제한 사전 설명** 의무

- **처리제한 사실**의 통지 및 **정보수취인 정보**의 제공 의무(제19조)

**cf. Directive** : 유사 규정 없음

##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처리정지요구권

-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항)
- 지체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의무 (제2항 본문)
-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지체없이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 의무 (제4항)

### △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사유 (제2항 단서)

- ✓ 법률에 특별한 규정 존재 or 법령상 의무 준수 위하여 불가피한 때,
- ✓ 타인의 생명·신체 해할 우려 or 타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있는 때,
- ✓ 공공기관이 타 법률 소정의 소관 업무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때,
- ✓ 계약의 이행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계약의 해지 의사 명확히 밝히지 않은 때

## ➤ 정보통신망법 : 해당 조항 없음

cf. 동의 철회권(제30조 제3항) : 동의 철회 시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의무 발생하나, GDPR의 처리제한권은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됨.

# 5. 정보이동의 권리

## ➤ GDPR 제20조 Right to data portability (정보이동의 권리)

1. 자동화된 수단에 의한 처리의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or 계약의 이행 필요성 있는 때,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회수할 권리 및 제3의 정보관리자에게 이전시킬 권리
  - 구조화되고 통상적으로 이용되며 기계적 판독 가능한 포맷으로 수령(receive) 가능
  - 다른 정보관리자의 방해 없이 제3의 정보관리자에게 이전(transmit) 가능
2.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정보관리자 간에 정보가 직접 이동되도록 할 권리
3. 공익적 목적 or 공적 과제 수행에 필요한 처리에는 행사 불가
4. 동 권리의 행사는 제17조(삭제권)의 규정에 부합 필요
  - 개인정보의 삭제권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Recital 68)

## ➤ GDPR 제20조 Right to data portability (정보이동의 권리)

-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부정적 영향 불허 (제4항)
  - 복수의 정보주체가 관련된 경우, 다른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침해 금지 (Recital 68)

### ☞ Recital 68:

- 자동적 수단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 위한 권리
  - 정보관리자가 정보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포맷을 개발하도록 독려 필요
  - 정보관리자에게 기술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처리시스템의 채택 or 유지 의무 초래 금지
- ❖ SNS 등의 서비스제공자들 간의 이전을 촉진, 서비스제공자들 사이의 경쟁 촉진도 기대

## ➤ cf. Directive,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유사 규정 없음

# 6. 반대의 권리

## ➤ Directive 제14조 The data subject's right to object

- 공익적 목적, 공공기관 업무 수행 목적 or 관리자의 정당한 이익 목적 위해 필요한 정보처리 시,
  - 정보주체의 특별한 상황과 관련하여 **압도적 정당화 사유(compelling legitimate grounds)**가 있는 경우, 언제나 **자신과 관련한 정보의 처리를 반대할 권리** 인정 (국내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 제외)
  - 정당한 반대가 있으면, 관리자는 자신이 유발한 처리에 있어 더 이상 해당 정보가 관련되지 않도록 해야 함(제1항).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Opt-Out 권리** 보장 (Recital 45)

☞ **compelling legitimate grounds**는 정보주체의 입증 책임

- **맞춤형 마케팅(DM)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가 DM을 위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기 전에 **미리 고지 받을 권리**,
- 그러한 공개나 제공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통보 받을 권리** 인정
- 회원국은 정보주체가 DM 목적의 처리에 반대할 권리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취해야 함(제2항).

## ➤ GDPR 제21조 Right to object

1. 공익이나 공적 과제의 수행 or 정보관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정보 처리(Profiling 포함) 시, 정보주체의 특수한 사정으로 그 처리에 **반대할 권리**
  - 정보관리자는 정보주체의 권익에 우선하는 처리의 압도적 정당화 사유 입증하지 않는 한, **계속적 처리 불가**
    -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Opt-Out의 권리** 보장
    - ☞ **Recital 69**: **compelling legitimate grounds**는 정보관리자가 입증해야 함(입증책임의 전환)
2. **맞춤형 마케팅(DM) 위한 처리** 시, **DM 관련 한도에서** 그 처리(Profiling 포함)에 반대할 권리
3. DM 위한 처리에 반대할 경우, 그러한 목적 위한 **계속적 처리 금지**
4. **반대할 권리의 명시적 주지 의무** 및 그 경우 타 정보와 **명백한 구분 제시 필요**
  - **과학적·역사적 연구 or 통계 목적 위한 처리** 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의 특수한 사정으로 그 처리에 반대할 권리 (제6항)

➤ **국내법** : 유사 규정 없음

# 7. 프로파일링에 대한 권리

## ➤ Directive 제15조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s

1. 정보주체의 업무 수행, 신용가치, 신뢰성, 품행 등 특정한 개인적 측면(personal aspects)을 평가하려는 경우로서,
  - 개인정보의 자동화 처리가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과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회원국은 정보주체에게 **해당 처리를 위한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2. 회원국은 본 지침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다음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위 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함
  - ✓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을 위한 정보주체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었거나 or 정보주체의 견해 반영 허용 등 정보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할 적절한 조치가 있었던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의 과정에서 채택된 결정
  - ✓ 정보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할 조치를 정한 법에 의하여 수권된 결정

☞ **프로파일링(profiling)**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음

## ❖ Profiling Recommendation

- 2010. 11. 23. 유럽이사회 각료 위원회 : Recommendation CM/Rec(2010)13 채택
- 제5조 : 정보주체의 각종 권리에 대해 규정
  - ✓ 프로파일링 관련 통지 받을 권리 (제1항)
  - ✓ 프로파일링 제한 원칙 위반에 따른 정정·삭제·차단의 권리 (제2항)
  - ✓ 프로파일링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반대할 권리 (제3항)
  - ✓ 프로파일링에 근거한 결정의 대상화에 반대할 권리 (제5항) 등
    - cf. 국가안보, 공공안전, 범죄의 예방, 정보주체의 보호, 타인의 권리 보장 등 목적 시 예외 (제6항)

## ❖ 「Advice paper on essential elements of a definition and a provision on profiling within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2013. 5. 13. WORKING PARTY 29 채택
- “**Profiling**” means any form of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tended to analyse or predict the personality or certain personal aspects relating to a natural person, in particular the analysis and prediction of the person’s health, economic situation, performance at work, personal preferences or interests, reliability or behaviour, location or movements. (GDPR 제4조 제4호에 영향)

## ➤ GDPR 제15조 Right of access

- ✓ profiling의 존재, 로직(logic) 정보, profiling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결과 등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 (제1항 제8호)

## ➤ GDPR 제21조 Right to object

- ✓ 공익이나 공적 과제의 수행 or 정보관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profiling의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특수한 사정으로 **profiling을 반대할 권리** (제1항)
  - 정보주체의 권익에 우선하는 profiling의 압도적 정당화 사유 입증하지 않는 한, 정보관리자는 profiling 지속 불가

☞ 프로파일링에 **compelling legitimate grounds** 있다는 점은 **정보관리자가 입증** (Recital 69)

- ✓ DM을 위한 profiling의 경우, **DM 관련 한도에서 profiling에 반대할 권리** (제2항)
  - 정보주체가 반대하는 경우, 그러한 profiling의 지속 금지 (제3항)

## ➤ GDPR 제22조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 making, including profiling

1. 자신에게 법적 효과를 초래 or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자동화된 처리(profiling 포함)에만 근거한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2. 적용이 배제되는 결정
  - ✓ 계약의 체결 or 이행에 필요한 경우,
  - ✓ EU or 정보주체의 권리·자유·정당한 이익 보호 위한 적절한 조치 규정한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
  - ✓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에 근거한 경우
3. 계약 체결·이행의 필요 및 명시적 동의로 적용 배제되는 경우에도, 정보관리자는 다음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 의무 부담
  - ✓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
  - ✓ 적어도 관리자 측에 인간의 개입을 요구할 권리,
  - ✓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권리,
  - ✓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등

## ➤ GDPR 제22조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 making, including profiling

4. 적용이 배제되는 결정이라도,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민감정보에 근거한 결정은 불허

- ✓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있는 경우, or
- ✓ EU 또는 회원국 법률상의 공익적 임무 수행의 경우, or
- ✓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의 보호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합당한 경우

### ☞ Recital 71

- 정보관리자는 프로파일링을 위해 적절한 수학적 또는 통계적 절차를 사용해야
- 특히 개인정보에 오류 수정 or 에러의 위험 최소화에 적절한 기술적 · 조직적 조치 적용해야
- 프로파일링이 민감정보에 근거한 차별적 효과의 야기를 방지하는 노력 필요

### ☞ Recital 71

- 유럽정보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는 프로파일링 관련 지침(guidance) 발표 가능

## ➤ 국내법 : 유사 규정 없음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4. 12. 23. 방송통신위원회)

## 제2조(정의)

4.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4조(공개된 정보의 수집·이용)**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를 **비식별화 조치**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허용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집·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내역정보의 수집·이용)**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이용내역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내역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6조(새로운 정보의 생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식별화 조치하여 수집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합·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다만, 새롭게 생성된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즉시 파기**하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된 정보와 이용내역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비식별화 조치의 적정성을 정보관리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 ✓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조치 후 재식별화(re-identification)의 가능성 완전 배제?
  - ✓ cf. 익명화(anonymisation)
- 우리도 GDPR과 같은 수준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권리 인정?

cf.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 (2014. 7. 30.):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위반 (2014 의결 제16호)

감사합니다